

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심사위원 모집공고

국민의 의료부담을 덜고, 안전하며 질 높은 의료이용을 돕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·평가 업무를 수행할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심사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시고자 합니다.

진료심사평가위원회 주요업무 및 기능

우리원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요양급여비용(진료비)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업무를 공정하고 전문성 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90명 이내의 상근심사위원과 1,000명 이내의 비상근 심사위원으로 구성되며, 주요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음

- 의·약학적인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, 심사 모니터링 및 개선에 관한 업무
-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, 평가 모니터링 및 개선에 관한 업무
- 수가·환자분류체계·상대가치 모니터링 및 개선에 관한 업무
- 의·약학적인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행위, 약제 및 치료재료의 급여 여부와 상대가치에 관한 사항 심의
-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, 심사지침에 관한 사항 심의·개선 업무
-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의·약학적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급여비용의 심사 등
- 그 밖의 원장이 심사평가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무

1. 모집분야 및 인원

| 구분 | 근무지 | 모집분야 | 모집인원 | |
|------------|-----|---|------------|----|
| 총 계 | | | 28명 | |
| 심사(평가)위원 | 본원 | 내과[감염, 내분비·대사, 류마티스, 소화기, 순환기, 신장 등], 산부인과, 안과, 약학, 영상의학과[진단, 중재시술], 외과, 정형외과 등 | 23명 | |
| | | 수원 | 내·외과계 등 | 1명 |
| | | 부산 | 내·외과계 등 | 1명 |
| | | 대구 | 내·외과계 등 | 2명 |
| 심사위원 | 지원 | 광주 | 내·외과계 등 | 1명 |

2. 근무조건

- 임기: 2년
 -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근거한 신분으로 법적 임기 보장
- 보수: 우리원 「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」에 의함
- 근무형태: 주 2~5일 근무
 - 주당 최소 16시간 이상 근무 가능자
- 근무지: 본원 및 해당지역

3. 응시자격 ※ “가, 나, 다, 라” 중 1개 필수

- 가.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사람
- 나. 약사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약학대학·의료기관·약국 또는 한국희귀·필수의약품센터에서 종사한 사람
- 다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대학·산업대학·교육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의약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
- 라. 건강보험 또는 보건의약과 관련된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과 같이 인정하는 사람

〈다 음〉

- 건강보험 또는 보건의약 관련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4급 이상의 공무원
 - 주무관청의 허가·인가를 받은 법인과 시민단체 및 소비자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)에서 건강보험·보건의약 관련 소비자 권익보호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
 -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1급 이상의 임직원
- ※ 이 경우 종전 「의료보험법」, 「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」 및 「국민의료보험법」에 의해 설립된 보험자 및 보험자 단체를 포함

4. 결격사유

- 가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23조의 다음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
 -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
 -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나. 「병역법」 제76조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는 사람
- 다.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
- 라. 우리원 「인사규정」 제1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

< 건강보험심사평가원 「인사규정」 제14조(결격사유) >

- ▶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▶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▶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▶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▶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▶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▶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▶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
- ▶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▶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▶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- ▶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경우에 그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5. 전형방법: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

○ 심사일정(예정)

| 서류심사 결과 발표 | 면접심사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2021. 5. 14.(금) | 2021. 5. 21.(금) |

※ 상기일정은 코로나19 등 내외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, 변동시 홈페이지 공지 예정

【 합격자 조회 방법 】

- 홈페이지: <https://hiraopen.incruit.com>
- 접속경로: 홈페이지 메인화면 > 합격자 발표
- 확인방법: 온라인 입사지원 시 기재하신 이메일 주소, 입사지원용 비밀번호 기입

6. 원서접수

○ 접수기간: 2021. 4. 23.(금) ~ 5. 7.(금) 18:00

○ 접수방법: 온라인(<https://hiraopen.incruit.com>) 접수만 가능

※ 방문 또는 이메일·우편접수 불가함

※ 본 모집공고 내에서 중복지원 할 수 없음

【 블라인드 채용 안내 】

우리원은 「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」을 준수하여 응시원서 내 출신지역, 가족관계, 사진, 성별, 나이, 학교명 등의 인적사항 기재란이 없으며, 면접심사 시 편견을 줄 수 있는 정보는 면접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

○ 입사지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

1. 입사지원서의 각 항목마다 정확하고 충실하게 작성

○ 자격요건에 따른 지원분야를 반드시 확인 후 선택

○ 자격 또는 면허사항은 자격명칭과, 등록번호, 발행처, 취득일을 반드시 입력

○ 경력사항은 아래 유의사항에 따라 입력

- 같은 의료기관 내 경력이라 하더라도 근로형태에 따라 반드시 정규직·비정규직 경력을 구분하여 입력

ex) 경력이 '01.1.1. ~ '19.12.31.인데, 최초 5년간 경력이 인턴 1년, 레지던트 4년 등 전공의 수련기간으로 계약직 등의 근로형태라면

“(계약직) '01.1.1. ~ '05.12.31. / (정규직) '06.1.1. ~ '19.12.31.” 과 같이 정규직 경력과 구분하여 행을 추가하여 입력

- 경력은 의사 또는 약사 면허취득일 이후 경력만 인정됨

ex) 경력이 '01.1.1.~'03.12.31.인데, 면허 취득일이 '01.1.15.이라면 경력시작일은 '01.1.15.로 입력

- 근무기관명, 근무부서, 직위 등 명확히 기재

- 동일 경력 중복 입력시 인정 불가

2. 모든 사항을 기재하고 「입사지원서 저장」 버튼을 누르고, 수험번호 생성 등 완료 여부 확인

- 「입사지원서 저장」 버튼을 누르더라도 접수 마감시각(21.5.7. 18시)까지는 지원서상 내용 수정 가능

3. 접수 마감시각(21.5.7. 18시) 이후에는 지원서 수정 및 저장이 불가함

4. 입사지원서는 응시자격·모집분야를 달리하거나 동일응시자격·2개 이상의 모집분야 등 중복 지원 불가

ex) 다음의 경우 중복지원으로 보아 '부적격'처리함

① 동일인이 의사 자격으로 본원을, 건강보험전문가 자격으로 본원을 지원하는 경우

② 동일인이 의사 자격으로 본원과, 부산지원을 모두 지원하는 하는 경우

③ 동일인이 의사자격으로 본원을, 건강보험전문가 자격으로 부산지원을 지원하는 경우

5. 접수 마감시각(21.5.7. 18시)에는 지원자가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 접수 요망

7. 제출서류

| 등록 서류 | 등록 대상 | 발급 유효기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· 의사·약사 면허증 | 해당자에 한함 | 공고마감일('21.5.7.) 기준 취득분 |
| · 경력(재직)증명서(의료기관 경력 포함)* | 응시자 필수제출 | 재직증명서의 경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|
| · 전문의(세부전문의) 자격증 | 해당자에 한함 | 공고마감일('21.5.7.) 기준 취득분 |
| · 학사학위 이상 졸업(학위수여) 증명서* | 응시자 필수제출 | 기한 없음 석사학위 소지자: 학사, 석사 졸업(학위수여)증명서 박사학위 소지자: 학사, 석사, 박사 졸업(학위수여)증명서 |
| · 병역필 확인 증빙서류* |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| 기한 없음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|
| · 취업지원 대상자(보훈) 증명서 | 해당자에 한함 | 최근 1개월 이내 |
| · 장애인증명서 | 해당자에 한함 | 최근 1개월 이내 중증장애인은 '중증장애인 확인서' 제출 |
| · 기타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일체 | 해당자에 한함 | 기한 없음 |

※ 재직(경력)증명서 및 면허·자격증·졸업(학위수여)증명서 사본의 제출은 지원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며, 그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

8. 우대사항

| 구분 | 요건 | 가점 |
|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취업지원대상자(보훈) | ·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| 면접전형 만점의 증명서상 가점 (5% 또는 10%) |
| 장애인 | ·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른 장애인 | 면접전형 만점의 10% |

9. 임용(예정)일: 2021년 6월~2021년 9월

○ 요양기관 개설자(대표자)는 임용 시 그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며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

○ 기타 영리 목적의 개인사업에 종사할 수 없음

※ 임용일은 임용대상자의 전 직장 업무인수인계 등 업무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10. 기타

- 적격자가 없는 경우 공고문의 채용 예정 인원 미만으로 채용할 수 있음
- 응시자격은 원서접수 마감일(2021.5.7.)을 기준으로 함
- 최종 불합격자의 채용서류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일체 파기함
- 응시원서 기재착오, 누락,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고, 기재된 내용 또는 증빙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채용 시 응시 자격이 제한됨
-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임용(증빙)서류 허위·착오기재, 임용 결격사유, 응시자격 제한 등에 해당하거나 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부적합한 자에 대해서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되거나 근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
- 채용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인사청탁 등이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의 취소, 근로계약의 해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채용 시 응시자격이 제한됨
- 정당한 사유 없이 임용일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며, 임용포기 시 사전 연락 바람
-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채용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동시 홈페이지 공지 예정
- 채용관련 문의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및 FAQ, Q&A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기타 문의사항: ☎ 1899-3504

2021. 4. 23.

건 강 보 험 심 사 평 가 원 장